

전자서명인증 평가업무 안내지침

February 2024



제·개정이력

No	일자	개정 내용	버전	작성자
1	2022.03.30.	제정 (전자서명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제정)	1.0	전자서명인증 평가팀
2	2022.05.11	개정 (절차서 개정 등)	1.1	전자서명인증 평가팀
3	2023.03.28	개정 (용어 정의, 평가 신청 제출 서류 개정 등)	1.2	전자서명인증 평가팀
4	2024.02.20	개정 ('3.1 준비 단계' 개정 등)	1.3	전자서명인증 평가팀
5				
6				
7				
8				
9				
10				
11				
12				
13				
14				

목 차

1. 개요	4
1.1 목적	4
1.2 법적 근거	4
1.3 평가 대상	4
1.4 평가 범위	4
1.5 평가 기준	4
2. 용어 정의	5
3. 평가 절차	6
3.1 준비 단계	6
3.1.1 평가 상담	6
3.1.2 평가 신청	6
3.1.3 예비점검	7
3.1.4 평가 수수료 산정	7
3.1.5 평가 수수료 청구	7
3.1.6 평가 수수료 납부	7
3.1.7 사전협의	7
3.2 평가 단계	8
3.2.1 평가팀 구성 및 평가계획 송부	8
3.2.2 평가 수행	8
3.2.3 보완조치 접수 및 확인	9
3.2.4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9
3.2.5 평가 결과보고서 상호 검토	9
3.3 평가결과 적정성 검토 단계	9
3.3.1 인정기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9
3.3.2 평가결과 검토/재검토	9
3.3.3 결함 사항 조치	10
3.3.4 증명서 및 인정마크 발급	10
4. 세부평가 기준	10
5. 기타	11
5.1 이의제기 절차	11
5.2 사고 대응	11
6. 문의처	11

1. 개요

1.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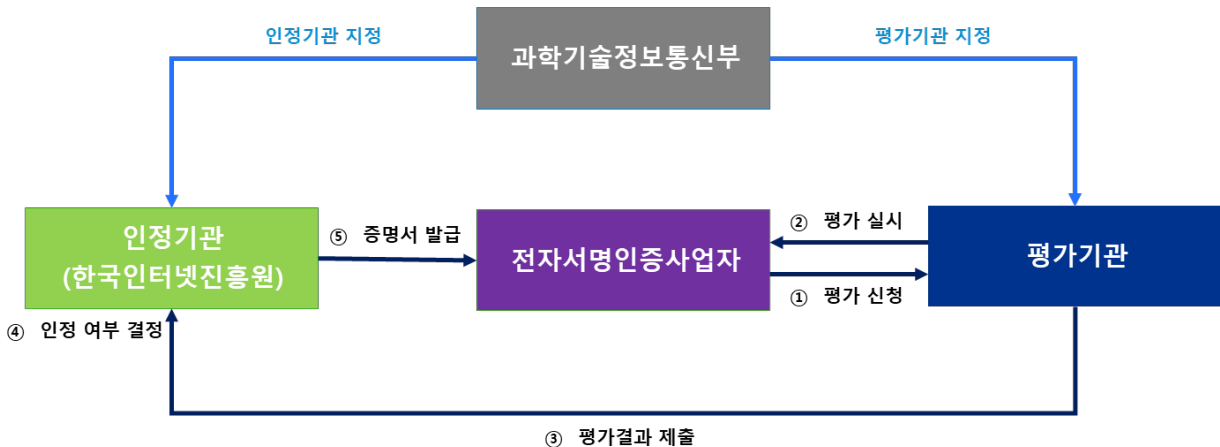
삼성KPMG가 수행하는 전자서명인증 평가업무(이하 "평가")와 관련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함

1.2 법적 근거

- ① 삼성KPMG는 「전자서명법」 제7조부터 제13조에 의거하여, 평가기관으로써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함
- ② 삼성KPMG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2022년 04월 18일 평가기관으로 선정됨
- ③ 삼성KPMG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직 및 전문성, 신뢰도, 업무수행, 시설 및 보안에 대한 평가에 걸쳐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음

1.3 평가 대상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함



1.4 평가 범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및 등록대행기관, 위탁업체 등을 통한 전자서명인증 업무를 범위로 함

1.5 평가 기준

삼성KPMG 세부평가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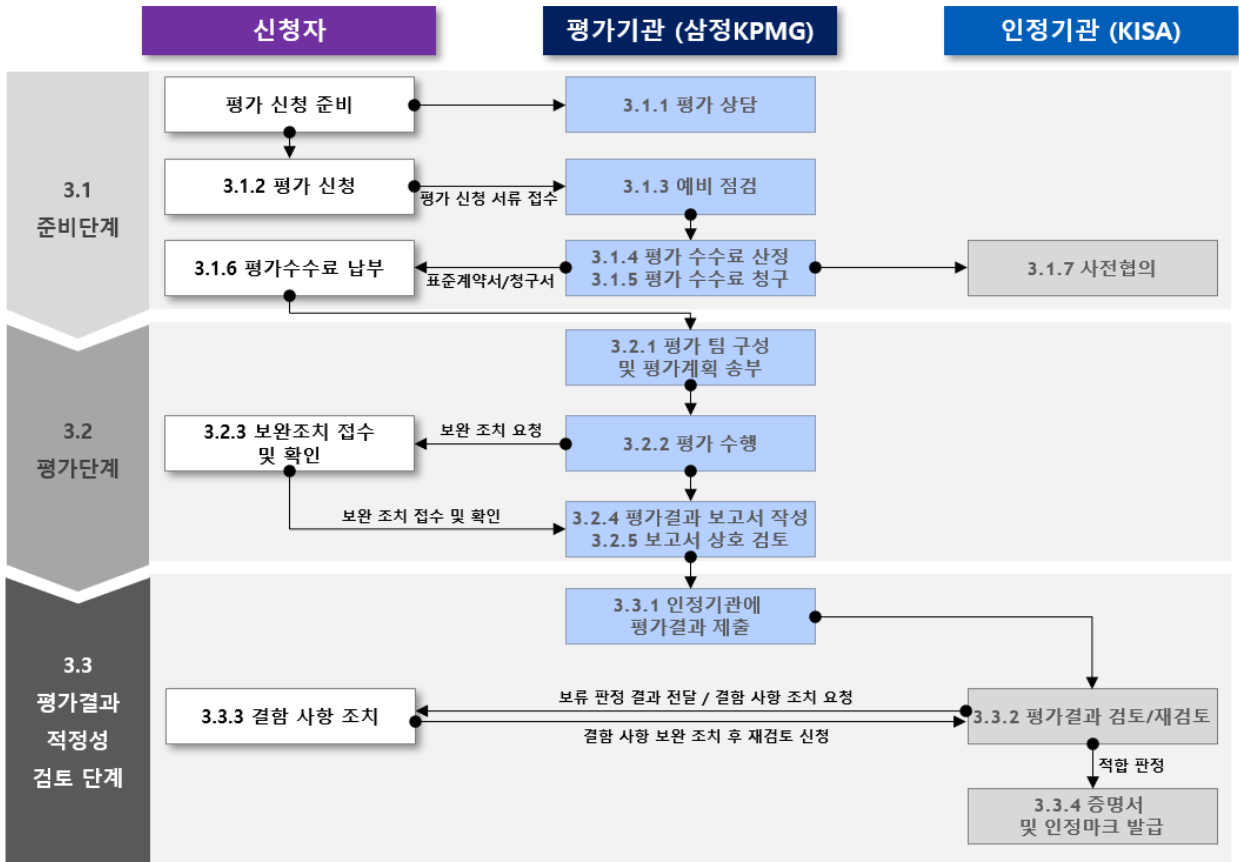
-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 전자서명인증업무 세부평가 기준' 참고

2. 용어 정의

- ①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② "전자서명"이란 아래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서명자의 신원
 -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③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삼성KPMG에 평가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를 말한다.
- ⑥ "인정기관"이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자서명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⑦ "평가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써, 본 안내지침에서는 삼성KPMG를 지칭한다.
- ⑧ "등록대행기관"이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접수 및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⑨ "세부평가 기준"이란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삼성KPMG가 정한 세부기준을 말한다.
- ⑩ "결함"이란 세부평가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말한다.
- ⑪ "보완조치"란 신청자가 결함의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 절차

평가 절차는 준비단계, 평가단계, 평가결과 적정성 검토 단계로 구분되며,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음



3.1 준비 단계

3.1.1 평가 상담

평가를 희망하거나 평가에 관심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상담을 접수하고 삼성KPMG 전담직원과 평가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상담할 수 있음

3.1.2 평가 신청

신청자는 평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삼성KPMG에 제출해야 함

- ① [별지 1] 전자서명인증 평가 신청서
- ② '[별첨] 전자서명인증업무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운영기준 명세서
- ③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CPS)
- ④ 법인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는 평가 신청 전 평가 범위 및 일정 등을 삼성KPMG와 사전 협의함
- 삼성KPMG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삼성KPMG는 평가 신청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자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신청자의 평가 신청 접수 거부 가능함

3.1.3 예비점검

삼성KPMG는 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의 준비 현황을 사전 확인함

- 평가 관련 정책 문서 등의 기본 자료 수립 여부, 신청한 평가 범위의 적절성, 평가 대상의 물리적 위치 등
- 삼성KPMG는 예비점검 결과 평가 준비가 미비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평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 신청 취소 가능함

3.1.4 평가 수수료 산정

삼성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수수료를 산정함

-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자문료는 평가 범위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의 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수수료를 계산하며, 출장비 등의 비용은 삼성KPMG의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 수수료를 책정함

3.1.5 평가 수수료 청구

삼성KPMG는 평가 수수료 청구를 위해 '삼성KPMG 표준계약서'를 신청자에게 전달함

- 표준계약서 내용은 삼성KPMG와 신청자 간 합의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음

3.1.6 평가 수수료 납부

신청자는 평가 수수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 수수료를 지정된 계좌번호로 납부해야 함

- 삼성KPMG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 납부일 조정 가능함
- 평가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삼성KPMG가 귀책사유가 있어 이를 인정한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3.1.7 사전협의

인정기관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 신청서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함

- 삼성KPMG가 사전협의 발표자료 및 제공자료를 공문과 함께 인정기관에 전달함

(사전협의 공문은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함)

- 신청한 평가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평가 범위를 재설정함

3.2 평가 단계

3.2.1 평가팀 구성 및 평가계획 송부

삼성KPMG는 신청자의 서비스 및 업무 특성, 평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함

- 평가팀 구성
 - ① 「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 ② 평가기관의 전자서명인증업무 및 정보보호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
 - ③ 평가기관의 평가 수행경력
 - ④ 평가기관의 평가 품질, 자질, 태도

신청인과의 이해관계(평가의 독립성 확보) - 신청자에 소속되어 있거나 과거 3년 동안 소속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자의 보안컨설팅, 위탁업무 등 관련 업무를 과거 3년 동안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자와 동종업계 종사자 등 배제

- 삼성KPMG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평가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2.2 평가 수행

평가팀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평가 수행함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개요
 - ① 서면평가 - 신청자의 전자서명인증 운영 현황이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운영기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함
 - ② 현장평가 - 서면평가 결과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등을 확인함
- 평가절차 중단

삼성KPMG는 아래의 사항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삼성KPMG와 신청자는 '[별지 3] 평가절차 중단 확인서'를 작성함

 - ① 신청자가 평가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의로 평가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가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평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평가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③ 신청자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평가 범위에서 누락한 사실을 평가기관이 발견한 경우
 - ④ 신청자가 평가절차 진행 중에 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신청자에게서 중대한 정보보호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는 평가절차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평가 재신청을 받을 수 있음

3.2.3 보완조치 접수 및 확인

평가 수행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삼성KPMG는 '[별지 2] 보완조치 내역서'에 결함내역을 작성하여 신청자에 결함에 대한 조치내역을 요청함

- 신청자는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수행하고 '[별지 2] 보완조치 내역서'에 조치내역과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삼성KPMG에 제출함
- 삼성KPMG는 보완조치 결과가 미흡하거나 신청자가 보완조치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삼성KPMG는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최대 100일 이내(연장기간 60일 포함)에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인정기관에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3.2.4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보완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3.2.5 평가 결과보고서 상호 검토

평가 결과보고서를 인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신청자와 보고서를 상호 검토 및 확인함

3.3 평가결과 적정성 검토 단계

3.3.1 인정기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삼성KPMG는 평가결과 및 평가처리절차 준수에 대한 검토·승인 후 인정기관에 평가 결과보고서(인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포함)를 제출함

- 삼성KPMG는 인정기관 요청 시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음

3.3.2 평가결과 검토/재검토

인정기관은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신청자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 신청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검토함 (적합/보류)

- 검토 과정에서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보류)
인정기관은 해당 내용을 결과서에 작성해서 전달하고, 신청자는 이에 따른 보완조치를 주어진 기간 내 수행해야함
- 인정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완조치를 확인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수행함
- 2회 이상 검토 결과가 보류로 나오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3.3.3 결함 사항 조치

신청자는 인정기관의 평가결과 검토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수행하여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음

3.3.4 증명서 및 인정마크 발급

인정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하여 증명서 및 인정마크를 발급하며, 인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증명서의 발급 내용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자는 발급받은 인정마크 아래에 인정을 받은 사업자명, 전자서명인증서비스명, 인정을 받은 연도, 순서를 순차적으로 기입한 후 신청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음
- 인정마크 게시를 통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적 근거를 준수함

4. 세부평가 기준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으로 전자서명 관련 준수 필요사항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정보보호 대책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을 포함함

- 세부평가 기준은 평가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평가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고 있으며, 제·개정 이력을 관리하고 있음
- 삼성KPMG는 세부평가 기준 내 항목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내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생략 가능함
- 본 평가업무 지침은 삼성KPMG 홈페이지(<https://home.kpmg/kr/ko/home.html>) 'Services > Advisory >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별첨] 전자서명인증 세부평가 기준' 참고

5. 기타

5.1 이의제기 절차

신청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4]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삼성KPMG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②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 ③ 평가 과정에서 평가팀이 평가관련 법령 및 윤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④ 기타 평가팀의 업무처리에 불만족한 경우
 - 이의신청 요건 중 1번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5.2 사고 대응

삼성KPMG는 화재발생에 따른 평가자료 유실, 평가자료의 도난 및 분실, 기타 비상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함

- 상기 사유로 인해 신청자에 피해발생 시 삼성KPMG는 협의를 통해 적절히 보상 가능함

6. 문의처

삼성KPMG 전자서명인증 평가팀	
이메일	kr-fm-TRUSTeSign@kr.kpmg.com